

# 2022 주요 업무보고

---

2022. 2. 11.

재 무 국

# I. 일반 현황

## 조직 · 인력

6과 34팀 243명/229명 (정/현원)



## 기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관리, 세입·세출 결산, 지출·계약 등</li> <li>○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li> </ul>
자 산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li> <li>○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li> </ul>
계 약 심 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li> <li>○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li> </ul>
세 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li> <li>○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li> </ul>
세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li> <li>○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li> </ul>
38세금징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li> <li>○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li> </ul>

##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합계	23,335,941	23,744,942	△409,001	△1.7
시 세	23,095,574	20,023,706	3,071,868	15.3
세 외 수 입	238,828	253,930	△15,102	△5.9
보 조 금	1,539	2,030	△491	△24.2
보 전 수 입 등	-	3,465,276	△3,465,276	△100.0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합계	3,196,029	3,128,916	67,113	2.1
인 력 운 영 비 ( 통 합 편 성 )	792,041	801,643	△9,602	△1.2
기 본 경 비	2,043	2,225	△182	△8.2
재 무 활 동	15,431	3	15,428	514267
사 업 비	2,386,514	2,325,045	61,469	2.6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666	1,759	△93	△5.3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12,034	8,935	3,099	34.7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35	42	△7	△16.7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760	2,242	△482	△21.5
시세입 목표달성	19,338	10,913	8,425	77.2
조세정의 실현	6,958	7,045	△87	△1.2
타 기관 지원	2,344,723	2,294,109	50,614	2.2
자치구 교부금(재정보전금)	1,866,943	1,781,631	85,312	4.8
자치구 교부금(시세징수교부금)	475,143	510,458	△35,315	△6.9
출연금(지방세연구원)	2,637	2,020	617	30.5

## 재 산 현 황 ( 市 )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합 계	58,048	105,287 (100.0%)	63,989	12,774 (100.0%)
행정재산	55,898	103,913 ( 98.7%)	7,035	6,006 ( 47.0%)
일반재산	2,150	1,374 ( 1.3%)	56,954	6,768 ( 53.0%)

## II .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재무행정 구현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1.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2.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
3.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1.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
2.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확대
3.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4.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1. 적정·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
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
3.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
4.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

1.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다각적이고 입체적 확보
2.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정책  
과  
제

실  
천  
과  
제

##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튼튼한 재정기반 마련

---

2.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

4.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

---



#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튼튼한 재정기반 마련

1-1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

1-2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

---

1-3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

# 1-1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부동산 경기 둔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누락 세원발굴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로 '22년 시세 목표달성 추진

시세 목표: 23조 956억원(전년대비 3조 719억원 ↑, 15.3% ↑)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A)	(점유비)	2021년 (B)	(점유비)	전년대비	
					금 액 (C=A-B)	비 율 (C/B)
계	230,956	(100.0)	200,237	(100.0)	30,719	15.3
취 득 세	62,046	(26.9)	50,589	(25.2)	11,457	22.6
지 방 소 득 세	60,521	(26.2)	51,964	(25.9)	8,557	16.5
재 산 세	38,276	(16.6)	33,945	(16.9)	4,331	12.8
지 방 소 비 세	21,892	(9.5)	18,243	(9.1)	3,649	20.0
기 타 시 세	48,221	(20.8)	45,496	(22.7)	2,725	6.0

※ 세외수입(일반회계) 목표 : 1조 8,023억원

## 추진 계획

- 시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세입징수 종합 계획수립” 시행
  - 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치구별 목표 관리 및 세입실적 분석 실시
  - 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구 합동 대책회의 실시(3월, 9월)
- 다주택자 및 법인시공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누락 세원 차단
  - 다주택자 가족 간 유상 거래 증여 해당 여부 등 일제 조사
  - 법인이 시공하는 개인 신축 건축물 취득세 탈루 일제 조사
- 법인 직접 부과 확대를 통한 행정 책임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
  - 시 세무조사 대상 확대(25→50개), 부과세목 불복에 대한 소송 등 직접 대응
    - ▶ '21년 조사실적 : 597억원, 최근 5년 자치구 패소 88억원(32.3%)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세 징수교부금	475,142,730	252,755,497	111,193,617	111,193,616	-
		1분기 교부금 집행	2분기 교부금 집행	3분기 교부금 집행	4분기 교부금 집행

## 1-2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체납자 자산의 촘촘한 추적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

'22년 체납 징수목표액 : 2,100억원

추진 계획

○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및 체납자 추적으로 공정 세정 구현

- 저축은행 및 본점이 없는 제2금융권 4,044개소 일제조사 및 압류·추심(1~3월)
- 전국의 주택·상가 분양권 일제조사 및 압류로 채권 확보(2~4월)
-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압류 및 추심 강화('22.1.28. 시행)  
※ 가상자산 자산이전 요구, 요구 불응 시 거래소 수색 권한 부여 및 거래소를 통한 매각 가능

○ 압류재산의 촘촘한 추적·관리로 체납세금 소멸 방지

- 10년 경과된 부동산 근저당권·가등기 등 7천건 일제조사 및 말소 소송제기로 채권확보(연중)
- 38세금 조사관과 실태 조사단(뉴딜일자리 5명)이 협업하여 거소·차량운행 밀착조사(3~12월)
- 압류된 보험계약의 분기별 관리 및 실효된 보험계약 즉시 추심(연중)

○ 시와 25개 자치구 협업으로 체납징수 목표액 조기 달성

- 25개구와 동시에 상습체납·외제·고급·운행정지 차량 집중 단속·견인(연 2회)
- 내·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자동차세 등 소액 체납자 일제정리 추진(7~10월)
- 자치구별 체납징수 실적관리 강화 및 자치구 지도점검(연 2회)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고액 체납 시세 징수	523,000	130,750	130,750	130,750	130,750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 1-3

##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정부에 개선의견 적극 개진

### □ 추진 계획

-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 자체연구사업('20년부터 시행 중)
  - '21~'22년 주택 실거래가 분석 및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상·하반기 총 2회)
    - ▶ 자치구별·가격구간별 주택가격 수준, 형평성 측정 연구를 통해 정부에 적극적 의견 개진
    - ▶ 한국부동산원에 이상치 물건(72건), 가격역전현상물건(81건) 조정 요청('22.1.6.)
- 「공동주택 공시가격 효율적인 조사·산정체계 재정립 방안연구」 용역(2월~)
  - 현행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한계 및 적합성 분석
  -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무적·효율적인 조사·평가의 구체적 방안 연구
    - ※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행안부, 서울시 합동연구과제로 추진
-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체 연구 추진
  - 시가표준액 산정시 지역별·유형별 가격수준 비교산출방식 도입 필요성 도출('21용역결과)
  - 유형별·구청별·가격구간별 비율 조사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4월~9월)
    - ▶ 행정안전부에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구결과 반영 적극 요구
- 자치구 공시업무 전문성 지원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연 2회)
  - 건축물 현황, 실거래가 등을 연계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시스템 구축(2월 완료)
    - ▶ 주택가격조사를 위한 다각적 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에 활용

###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	103,350	98,850	1,500	1,500	1,500
		시스템 구축 비용 공시가격센터운영	공시가격센터운영	공시가격센터운영	공시가격센터운영

※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구축 사고이월 97,350천원 포함



## 2.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2-1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

---

2-2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확대

---

2-3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

2-4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

## 2-1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에 대하여 다각적인 세제 지원으로 민생 회복 도모

###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지방세 감면

- 현재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존치기간 1년 초과 시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의료기관의 세금 부담 가중
  - 서울시 선별진료소 총 238개소 중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133개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계속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납세부담 경감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건축물 감면 조항 신설(2월 의회 상정) 하여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면제
  - 자치구도 시 일정에 맞추어 자치구 감면 조례에 재산세 감면 추진 병행
- 감면규모: '21~'22년 23백만원 예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 대 상: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 내 용: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 감면 규모를 50% ⇒ 60%로 확대
- 기 간: '22년 1월 ~ 6월
- 규 모: 279억원 예상
  - ※ '20.2~'21.12월까지 총4,249개소, 733억원 지원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계속 지원

- 대 상: 자영업자 등 코로나 직·간접 피해자
- 내 용: 납부기한 연장, 세율인하,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 실 적: 총 834,476건, 8,342억원 지원('20년~'21년)

### 예산집행 : 비예산

## 2-2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확대

전자고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전자고지 납부·신청을 용이하게 하여 납세 편의 서비스 개선 추진

### □ 추진 계획

#### ○ 종이고지 감축을 위한 전자고지 납세자 혜택 확대 추진

- (현행) 전자고지·납부 납세자에게 마일리지와 세액 공제 혜택 각각 제공
    - ▶ 고지서 1건당 마일리지 최고 500원, 세액 공제 최고 500원, 합계 1,000원
  - (개선)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혜택을 부여하는 세액공제로 통합 운영
    - ▶ 납세자 혜택 : 현행 최고 1,000원 → 향후 최고 1,600원으로 확대 추진
- ※ 정기분 17,126천건 중 ('21) 전자고지 19.5%(3,343천건) → ('22) 24.5%(5%↑)

#### ○ 전자고지·납부 스마트폰 앱 확대 및 전자고지 신청 편의성 제고

- (현행) 카카오·네이버·페이코·신한 앱(4개) → (개선) '토스' 추가(5개)
  - ▶ 토스 앱은 가입자 2천만명 규모로, 서울시민 세금납부 선택의 폭 확대
- (현행) 전자고지·납부 신청 시 결제회사 홈페이지 개별 방문 필요
  - (개선) 결제회사 개별 방문 필요 없이 ETAX에 QR코드 제공으로 전자고지 신청 가능

#### ○ AI챗봇 기능 및 이용수단 확대를 통한 세금 상담 서비스 고도화

- (현행) 문자로만 상담 → (개선) 문자상담에 음성상담 기능을 추가한 챗봇 제공
- (현행) 스마트폰 앱 → (개선) 스마트폰 앱 외 PC 챗봇으로 상담 서비스 추가

###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자고지 마일리지 개선	비예산	계획수립	조례개정	조례개정	-
전자고지 앱 개선	비예산	계획수립	시스템 개발	시스템개발	-
세입수납시스템 AI 챗봇 고도화	비예산	-	관련 시스템 개발	AI학습추진	-

## 2-3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마을세무사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현장 세무상담 확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 궁금증 해소 및 절세 방안 지원

### 운영 개요

- 구 성 : 423개동 425명('21년) → 426개동 428명('22년)  
※현재 5기 마을세무사 총 428명 활동 중(임기 2년, '22년~'23년)
- 역 할 :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임기 2년)
- 성 과 : '15년~'21년 총 2만 6천여건 상담

### 추진 계획

- 제5기 마을세무사 온·오프라인 홍보 및 소통 강화('22.1월~ )
  - 서울시 블로그,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물(카드뉴스, 영상물) 제작·게시 요청
  - 리플릿·포스터 제작 후 자치구 및 다중시설에 비치, 홍보 협조 요청
  - 밴드 개설·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마을세무사와의 쌍방향 소통 강화
-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운영('22.4월~)
  -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시 현장 세무상담 부분 지원
  -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위주의 방문상담 지원 하여 영세사업자 사업소득세 절감 방안 및 기타 세금 관련 궁금증 해소  
※ 현장 방문 상담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단계별 탄력적 운영
- 마을세무사 활동 독려 및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22.6월, 12월)
  - 우수 활동자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활동실적 저조한 세무사 독려 등
  - 마을세무사 사기진작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및 지원사항 지속적 발굴(상시)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마을세무사 운영	19,150	16,750	1,000	400	1,000
		명판 및 홍보물 제작	현장상담, 협의회	현장상담	현장상담, 협의회

## 2-4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한 경제재기 지원을 통해 계층사다리 구현

### □ 추진 계획

- 서민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일자리 등 맞춤형 연계 지원
  - 뉴딜 일자리 상담사(3명) 활용, 생계형 서민체납자 체납정리 지원
  - 체납자 유형에 따라 복지서비스, 일자리 알선, 회생 지원 등 체납자 경제 재기 종합지원
- 금융계좌 등 압류채권에 대한 실효성 조사 후 압류 해제
  - 사업이나 재 창업이 곤란한 경우 조사 후 계좌 압류 해제
  - 분할납부 적극 안내 등 체납세금 부담 완화와 경제적 회생 지원
-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는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적용
  - '22년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하여 월 225만원 미만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 ※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제한기준 : 월 185만원
- 서민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완화
  - 신용불량자 등록 보류, 부동산·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보류

###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정책과 재배정)	108,250	10,825	32,475	32,475	32,475
		계획서 수립 및 뉴딜 일자리 인력 교육	생계형 체납자 발굴 상담, 지원, 실적관리	생계형 체납자 발굴 상담, 지원, 실적관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평가



##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3-1 적정·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

---

3-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

---

3-3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

---

3-4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

## 3-1 **적정·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

서울형품셈 등 공통기준으로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예산의 과다 지출을 사전 방지하고 신속한 계약심사로 사업의 조기발주 적극 지원

### 추진 계획

#### ○ 공통기준 적용을 통한 적정 원가 산정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 [서울형품셈] 표준품셈에 없거나 상이한 현장상황과 여건을 잘 반영한 서울형 품셈을 민·관 협업방식으로 개발하고 기 발굴 품셈도 보완
- [공통기준마련] 공통 공사자재단가 및 폐기물 처리비 단가, 상수도 라인스토핑 자재 단가 등 계약심사 공통단가 마련
  - ※ '22년 상반기 공통 공사자재단가 공유현황 : 284종 1,324개

#### ○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발주 지원

- [집중심사기간('22.1.~6.)) 3일 이내 처리 목표 ※ '21년도 평균처리기간 3.3일
- [사전검토제] 계약 사전절차(건설심의 등) 진행 중 병행검토로 심사기간 단축
- [유사사업 통합심사] 기관별 발주하던 유사사업(가로등 개량공사 등) 일괄신청 통합 심사로 심사 효율 도모(8개 유형 194개 사업)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조정율이 낮은 사업은 한시적으로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심사의 효율성 제고(7개 부서, 112개 사업)

####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 및 적정 원가산정 지원 강화

- 비대면 영상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계약심사 매뉴얼 행정포털 게시
- 특정제품 및 계약심사 관련 '웹툰' 제작·배포로 업무 이해도 향상
- 설계변경 심사제외 대상공사에 대한 원가 검토 지원(발주부서 요청시)
- 민간공사(주택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원가자문서비스 제공(조합 요청시)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비예산	계획수립, 사전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일괄신청 통합심사	비예산	계획수립, 통합심사	통합심사	통합심사	신규 유사사업 발굴
서울형 품셈개발 지원	비예산	계획수립	현장실사	현장실사	품셈개발완료

## 3-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

사업 발주단계부터 계약완료단계까지 계약의 전과정을 관리하고 「서울 계약마당」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 □ 추진 계획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방법의 적정성 확보
  - 변호사, 교수, 건설연구원 등 분야별 계약전문가로 구성(외부 12명, 내부 1명)
  -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물품의 입찰, 낙찰자결정방법 등 심의
    - ▶ '21년 계약심의위원회 총 14회 개최, 115건 심의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금액 상향 및 계약절차 간소화(~'22.6월)
  - 계약이행에 따른 검사 7일 이내 완료,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1/2 축소로 업체 부담완화
-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으로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22.1월~)
  - 입찰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로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실업체 패널티 부여
    -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및 「협상계약 정량평가 표준안」 개정 등
- 협상계약 평가점수 합리적 조정 및 입찰서류 제출방법 간소화('22.2월)
  - 수행능력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협상계약 가점 평가방법 변경, 변별력 강화
  - 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입찰서류 제출하던 것을 무방문·온라인서비스로 전환
    - ▶ 온라인 서비스 지원 미대상 서류는 기존 방식 유지
-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계약정보 제공 및 실적증명 서비스 등 시민편의 제고
  - 입찰 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계약마당으로 통합관리·공개
  - 시설공사, 전기공사, 용역, 물품, 문화재수리 등 실적증명 서비스 제공 확대(9종→10종)

###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140,306	35,076	35,076	35,076	35,078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7,037	6,759	6,759	6,759	6,760

### 3-3

##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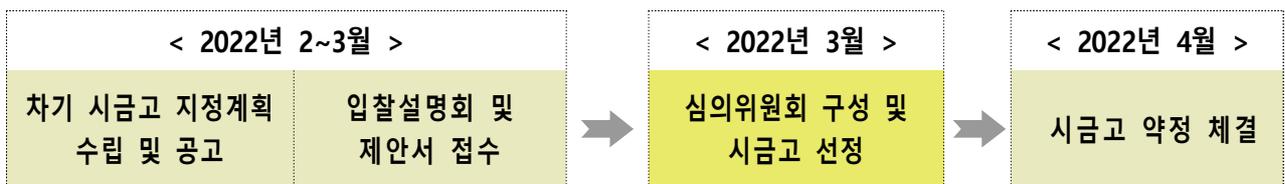
현 시금고 약정기간('19.1.~'22.12.) 만료 도래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차기 시금고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수익성 제고

#### □ 차기 시금고 개요

- 운영기간 : '23. 1. 1. ~ '26. 12. 31.(4년)
- 재정규모 : '22년 예산 47.7조원(일반 31.3조, 특별 12.9조, 기금 3.5조)
- 금고은행 : 1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2금고(기금)

#### □ 추진 계획

-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 선정
  -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 등 평가 강화
- 시민이용 편의성 증진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참여 유도로 사회적 책임 강화
  - 비대면 추세에 맞춘 ATM 수, 녹색금융 이행실적 평가항목 등 신설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및 투명한 선정 절차로 시정 신뢰도 제고



-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 적기 지원
  - 코로나 방역 및 소비투자분야 우선 지출 등 부서협력을 통한 전략적 세출집행
- 금리인상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한 맞춤형 자금관리로 수익성 제고
  - 예금 분할 예치, MMDA 가입 등 적극적 자금 운용으로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 추구

####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금 운용	비예산	자금운영 계획수립(3월)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 3-4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20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 □ 결산개요

- 대상기관 : 42개 기관 276개 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0개), 기금(17개)
- 작성항목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 □ 추진계획

-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 작성 : ~ 3.18.
- 결산검사 실시 : 4.12. ~ 5.16.(35일간,예정)
  - ※ 최근 결산검사 시정권고 건수 : '21년 77건, '20년 66건, '19년 81건
- 결산승인(안) 등 안건 의회 제출 : ~ 5.31.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등 3건
  - ※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시민의 결산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결산서의 '결산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제307회 정례회) : 6.10. ~ 6.29.
- 결산 결과 고시(승인 후 5일 이내) 및 시민참여결산 실시 : 7월 ~ 8월
  -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점검 및 결산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 : 7월~

####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결산업무 추진	205,410	42,780	158,630	1,000	3,000
		계획수립 및 결산서작성	결산검사 및 승인	시민참여결산	결산교육교재 등



## 4.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

4-1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다각적이고 입체적 확보

---

4-2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

4-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

## 4-1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다각적이고 입체적 확보

시책사업 필요재산 확보를 위해 시유건물 내 유휴공간 발굴 및 중앙정부·교육청 등 타 기관과 정책 공조를 통해 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 도모

### □ 추진 계획

#### ○ 시유건물 내 유휴공간 및 노후청사 활용

- 시유건물 전수조사 중 1단계로 실시된 서남권('20~'21)의 유휴공간과 30년 이상된 노후 시유건물 중 '증축 가능' 시설
- 발굴된 유휴공간·시설은 사업부서, 공공개발기획단 등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사례 도출
- ※ 서북·도심권('21~'22.6), 동북권('22.3~) 등 단계별 현장조사 확대

#### ○ 중앙정부 및 교육청 등 타 기관과 정책 공조를 통한 협력 모델 구축

-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전략적 제휴로 도심내 국유 노후 청·관사 복합개발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 및 지역 거점시설 구축
  - ▶ 국가 소유의 노후화된 공공청사의 재건축시 우리시와 건축비용 공동부담 및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가청사+市 공공시설」 복합개발 시행
- 교육청과 폐교부지 및 저활용 학교 건물을 이용한 사업거점 공동개발
  - ▶ 방과 후 과정 및 돌봄 운영 등 학생 지원시설과 환경·문화 예술 공간 등 시책사업 공간으로 공동 개발하여 상생 모델 구축

###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입체적 확보	비예산	노후청사 개발 계획 수립 타기관(중앙정부, 교육청) 부지 조사	노후청사 개발 용역 발주 타기관(중앙정부, 교육청) TF 구성	노후청사 개발 용역(계속) 중앙정부, 교육청과 업무회의	노후청사 개발 용역 결과 중앙정부, 교육청과 업무회의

## 4-2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시 차원의 체계적 재산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시유지 지적 정리 등을 통해 시유재산 가치 증대

### □ 추진 계획

- 공유재산 총조사로 누수 없는 재산 관리 실시
  - 재산관리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서면 중심 조사로 실태 파악의 한계
  - 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구분, 매년 1개 권역씩 부서 합동 현장 조사 실시
    - ▶ '22년 도심권(종로·중구) 시범사업 추진 후 최적 조사방안 마련, '23년부터 확대 실시
  -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 실태 파악을 통해 효율적 재산관리
- 시유지 지적 정리로 재산관리 효율화 및 재산가치 제고
  - 주요시설 내 여러 필지로 산재된 시유지를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단일 필지로 지적 정리하여 효율적 재산관리 및 재산가치 제고 도모
    - ▶ '22년도 추진 대상 : 남현동 주차장 부지 등 총 3개소
- 보존부적합 소규모 부지 관리개선으로 시민이용 활성화 및 세입증진 도모
  - 매각·대부 가능 시유지 인터넷 상시 공개, 공개매각으로 적극적 시민활용 유도
- 국가·서울시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
  - 행정안전부(공유재산 총괄) 및 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국유재산 총괄)와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
    - ▶ 경찰청과 교환 공감대 형성('21.8) 및 기재부와 협의 중('21.9~)

###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공유재산 총조사	비예산	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실시	차년도 대상지 선정 등
집단화 사업	100,000	-	50,000	50,000	
		사업대상지 확정, 업무협약	기초측량 실시	확정측량, 공부정리	공부정리, 자가 재조사 의뢰

## 4-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사업부서의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산관리

### □ 추진 계획

- 시유재산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사업부서 업무 효율화
  - 시유재산 관련 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사업부서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
  - 실무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알기 쉬운 공유재산 업무매뉴얼」 작성·배포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시유재산 무단점유 및 공부상 불일치 자료 정비
  -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 변상금 부과 등 조사대상 재산별 적정 관리 방안 마련
    - ▶ '22년 주요 조사대상 : 서북권 공공용도로(215건) 조사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내실화 및 관리계획 사후관리 체계 마련
  - 공유재산 최유효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확대 (330㎡ 이상 매입, 신·증축 → 매각·교환 추가)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사업의 진행여부 파악을 위한 전산관리 강화
-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22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22.4월) 및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 독촉·체납고지 일제발송, 수시 현장방문 및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 병행

###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밀실태조사	100,000	-	-	100,000	-
		사업계획, 입찰공고	계약체결,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 IV. 세입·세출 예산 현황

###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3,335,941,412	23,744,942,246	△409,000,834	△1.7%
시 세	23,095,574,000	20,023,706,000	3,071,868,000	15.3%
세 외 수 입	238,827,986	253,930,298	△15,102,312	△5.9%
보 조 금	1,539,426	2,029,872	△490,446	△24.2%
보 전 수 입 등	-	3,465,276,076	△3,465,276,076	△100.0%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2 예산	2021 예산(최종)	증 감	
			금 액	증감률
총계	3,196,029,615	3,128,916,205	67,113,410	2.1%
재무과	795,287,905	805,161,102	△9,873,197	△1.2%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07,988	795,710	12,278	1.5%
2021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68,806	212,580	56,226	26.4%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211,013	175,703	35,310	20.1%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110,057	334,708	△224,651	△67.1%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7,037	25,957	1,080	4.2%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01,000	101,000	-	-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140,306	113,080	27,226	24.1%
기본경비	1,580,356	1,759,756	△179,400	△10.2%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92,041,342	801,642,608	△9,601,266	△1.2%
자산관리과	27,511,927	8,981,884	18,530,043	206.3%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교환	10,400,000	7,000,000	3,400,000	48.6%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507,250	1,816,164	△308,914	△17.0%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6,933	118,354	8,579	7.2%
기본경비	47,366	47,366	-	-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430,378	-	15,430,378	100.0%

구 분	2022 예산	2021 예산(최종)	증 감	
			금 액	증감률
<b>계약심사과</b>	<b>103,873</b>	<b>112,168</b>	<b>△8,295</b>	<b>△7.4%</b>
계약심사 업무추진	35,250	42,500	△7,250	△17.1%
기본경비	68,623	69,668	△1,045	△1.5%
<b>세제과</b>	<b>1,871,464,886</b>	<b>1,786,021,075</b>	<b>85,443,811</b>	<b>4.8%</b>
재정보전금	1,866,943,000	1,781,630,523	85,312,477	4.8%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36,716	2,020,215	616,501	30.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8,520	186,920	△8,400	△4.5%
마을세무사 운영	19,150	28,000	△8,850	△31.6%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1,200	-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1,546,356	1,620,741	△74,385	△4.6%
부동산가격 공시지원	15,000	405,651	△390,651	△96.3%
기본경비	124,354	125,260	△ 906	△0.7%
국고보조금 반환	590	2,565	△1,975	△77.0%
<b>세무과</b>	<b>494,625,646</b>	<b>521,517,168</b>	<b>△26,891,522</b>	<b>△5.2%</b>
시세 징수교부금	475,142,730	510,458,159	△35,315,429	△6.9%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69,117	172,474	96,643	56.0%
지방세고지서 인쇄 통합관리	869,319	850,532	18,787	2.2%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304,151	182,991	121,160	66.2%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292,700	192,700	100,000	51.9%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100,000	-	-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1,949,637	1,300,530	649,107	49.9%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21,108	1,730,770	190,338	11.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12,690,425	5,000,000	7,690,425	153.8%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	503,770	△503,770	△10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41,472	879,732	61,740	7.0%
기본경비	144,987	145,510	△ 523	△0.4%
<b>38세금징수과</b>	<b>7,035,378</b>	<b>7,122,808</b>	<b>△87,430</b>	<b>△1.2%</b>
고액 체납시세 징수 강화	580,040	318,140	261,900	82.3%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9,018	1,940,024	288,994	14.9%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4,148,754	4,787,078	△638,324	△13.3%
기본경비	77,566	77,566	-	-

# V.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6	23	13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2	7	5	-	-
	건의 사항	17	9	8	-	-
	기타(자료제출 등)	7	7	-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압구정동 390번지는 사유지이나 국방부에서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임대를 주어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재산관리 총괄관으로서 재무국의 사유재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거 매년 재산관리관 주도로 무단점유 사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매각 등 조치를 취하도록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사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계획 (자산관리과-3836, '21.4.7.)</li> </ul> </li> <li>○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지적공부, 등기 사항증명서 대조를 통한 등기 누락여부 파악과 현장 점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재산관리관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21.5.12.)</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재산관리관 주도 정기실태조사와 더불어 총괄관리관 (자산관리과)과 각 재산관리관이 협업하여 현장 전수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를 권역별/용도별 구분하여 합동 전수조사 실시</li> <li>- 무단점유 재발방지를 위해 무단점유 의심사례 선정, 현장조사 후 전문기관을 통한 드론활용 및 정밀 측량으로 무단점유 발굴 및 각 재산관리관의 후속조치</li> </ul> </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2022년도 서울시 지방세 세입 예산 편성 규모가 금년 대비 15%를 초과하는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 성격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많은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세수추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5년간 전년 실적과 유사한 수준의 보수적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계속된 지적이 있었으며, 징수액도 5년 평균 예산대비 15.1% 초과징수가 발생하였음</li> <li>○ 최근 지속된 부동산 규제 정책, 대출제한과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최근 부동산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2년 이상 지속된 가격상승도 인상폭의 감소가 시작됨</li> <li>○ 다만, 주택 외 상가, 빌딩, 토지 등의 거래는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줄지 않고 있고, 향후 정부의 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거래세 완화 정책 기대감과 코로나 치료제 보급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잠재된 소비 정상화 등이 기대되어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함</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0대 의회 출범이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해 오고 있는데 개선된 것은 출연금 규모가 일부 조정된 것 외에는 발전이 없음. ①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출자출연법상의 재단법인화를 통한 정상화 방안 마련, ②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면서도 연구원 출연 재원에도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이중지출 문제 개선, ③출연금 산출방법을 예산 규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의 개선, ④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 ⑤지방세 제도발전을 위해 출연금 일부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을 바라고, 관찰될 때까지 행안부와 타지자체와도 협의하기 바람. 상기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을 예산심사 시까지 제출하기 바람</p> <p>(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중</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p>① 재단법인화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가 설립하고,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이어야 함 (법률자문회신 2018-0903, 법률지원과 '18.11.16)</li> </ul> </li> <li>○ 특수법인인 기타법인은 민법법인인 재단법인으로 등기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질의 및 회신결과('19.4.8)</li> </ul> </li> </ul> <p>② 출연대상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면담을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9.30 행안부 전화면담, '21.10.28 개정건의</li> <li>※ 행안부 의견 : 모든 지자체 협의시 신중 검토</li> </ul> </li> </ul> <p>③~⑤ 출연금 산출방법을 예산규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의 개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 출연금 일부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연구원의 자율적 개선 방안 강구 요청('21.9월)</li> <li>○ 서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의 활용 및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 의뢰('21.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간 : 2021.10월~2022.2월 (5개월)</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연구원의 자율 개선방안 수립시 개선 사항 검토 및 관리</li> <li>○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방세연구원 관리 개선 추진</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비전 2030' 발표 시 48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해 주는 바람에 지난 3년간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하여, 재산세는 최종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자치구 재원으로써 서울시 사업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지난 3년간 재산세 세입 증가율은 30% 내외 수준에 그침. 오세훈 시장은 현실과 사실 면에서 모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에서는 추후라도 정정 보도자료를 내던지 내부적으로라도 진언을 하시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비전2030은 향후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위한 예산의 재원은 주로 ①<u>세출구조조정</u>으로 하고 보조적으로는 경기회복,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②<u>지방세 세입증가분</u>을 감안하여 기획된 사업임</li> <li>○ 재산세를 언급한 것은 지방세의 많은 재원 중 하나만을 예시로 든 상황으로 보아야 할 사항임</li> <li>○ 향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비전 사업의 기획시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기조실, 언론과 등)에 협의하겠음</li> </ul>
<p>○ 서울시 공유재산 운영에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안건 통과율이 96%에 달함.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심의 전에 심의회에서 사전 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사업 부서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상정 전 의회 의결 없이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부서 공문발송, 행정포털 사업무공지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 중에 있음</li> <li>○ 또한 관리계획 의결 후에도 삭제된 안건 및 관리계획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과 전 상임위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의결 결과를 공유하고 있음</li> <li>○ 향후에도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절차 확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사 사업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절차이행 준수 안내</li> <li>-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부서 상담시 의회 예산 편성권 존중 안내</li> <li>- 심의회 절차 미준수시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미편성 조치 등</li> </ul> </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감사원이 작년 6월 SH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올해 4월 市 감사위원회를 통해 통보 받은 바 있으며, 위탁 시유재산 처리 부적정 사례 및 시유지 위탁 관리 업무 철저 등의 주의를 받았음. 세입결손으로 인한 서울시 운영의 방해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 시유재산 업무처리 부적정 125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측량 의뢰, 매각·대부계약 체결, 행정재산 전환 등 조치방안 마련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2월말 기준, 조치완료 56건, 조치중 69건</li> </ul> </li> <li>○ 변상금 체납자 중 재산조회 결과 유재산자 16명 중 12명 압류조치 완료('21.12월말 기준, 분기별 실시)</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3.31.까지 처분요구사항 조치 완료 예정</li> </ul>
<p>○ 서울시 마을세무사 추천을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상담을 1건도 하지 않은 마을세무사가 전체의 50%임. 서울시 마을세무사라는 경력을 영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실적 제출양식 간소화 및 제출방법 재안내('2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기 작성 시 상담내용 기록카드 작성 생략 안내</li> <li>- 활동요령 안내문 및 상담실적 작성법 카드뉴스 밴드 게시</li> </ul> </li> <li>○ 제5기 마을세무사 위촉('2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 저조 세무사 포함 74명 해촉 후 희망자로 신규 위촉</li> </ul> </li> <li>○ 마을세무사 주도적 참여 유도('2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세무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밴드 개설·운영</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리플릿, 포스터 이외 뉴미디어 홍보물 제작·게시 요청</li> </ul> </li> <li>○ 마을세무사 경력 영업수단 이용 주의 요청 안내(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안전 상정, 고시회 공문 발송 등</li> </ul> </li> <li>○ 마을세무사 활동 모니터링(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기 중 실적 저조 세무사 활동의사 확인 후 희망자로 신규 위촉</li> </ul> </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취소되었으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들이 있음.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서에 관리계획 가결 이후 사업 진행 취소 시 관리계획을 재상정 해야함을 재차 안내하고 의회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음 (자산관리과-12123호, 2021.11.25.)</li> </ul>
<p>○ 서울시 재산의 감정평가를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선정해 주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음. 서울시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감정평가사협회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협회 또한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몰아줄 우려가 있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존 방식인 확정순번제가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정평가업자추천제 활용에 대한 협조 요청('18.7.6)이 있어 감정평가추천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음</li> <li>○ 감정평가업자 추천의 공정성을 당부하는 공문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발송하였으며(자산관리과-141, '22.1.5),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지 않도록 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li> </ul>
<p>○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9월 302회에 제출했다가 11월 303회에 제출함.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 세제과장, 재무과장이 모르고 있음. 2022년 예산을 심의해야할 시기에 조례안을 뒤늦게 제출하여 충분히 심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등 예산 관련 조례 제·개정안은 다음연도 예산심의 정례회 전 회기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하겠음</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편의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소관실국 위원회 중 외부위원에게 지급한 수당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누락하였으며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매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근거 마련 후 별도로 보고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행정사무감사 해당 요구자료에 대하여 재무국 소관 상설 위원회에 대한 외부위원 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음</li> <li>○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요구자료에 대해 누락이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음</li> <li>○ 또한 법적근거가 없는 부동산취득세자문회의의 상설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출완료함('21.11월)</li> </ul>
<p>○ 조례를 통해 감면되고 있는 세액 규모가 82억 원에 달하고 있어, 조세 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지원이 사업 효과성 면에서 우월할 수 있으니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할 것임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연구 용역 추진('22년도)</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시세 감면 타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면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몰 기한 도래 시 조례 개정에 반영하겠음</li> </ul>

#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지방세 체납 결산서의 가독성이 떨어지게 계상되고 있으니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 규모를 한 곳에 모아 결산서에 계상해 줄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서 작성시 지난년도 수입을 세무과 및 38세금징수과에서 나누어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과 : 자치구에서 위임징수한 지난년도 체납시세를 계상</li> <li>- 38세금징수과 : 시로 이관된 고액체납시세만(1천만원 이상) 계상</li> </ul> </li> <li>○ 결산서 작성시 지난년도 수입을 세무과와 38세금징수과에서 각각 처리하던 방식을 38세금징수과에서 일원화하도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7월 2022년 세입예산편성 부터 38세금징수과에서 업무처리</li> </ul> </li> </ul>
<p>○ 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일반 주무관보다 팀장급 초과 근무시간이 더 많음. 직원들의 눈치 보기 야근이 우려되는 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팀장급부터 슬선수범해 줄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보다 팀장급 초과근무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실시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주무관의 비율이 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사료됨.</li> <li>○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재무국 소속 팀장급 대상으로 5급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최대 연 600시간, 월평균 50시간 이내)를 준수하도록 안내(2021.11.24.)하였고,</li> <li>○ 앞으로도 부서장이 팀장급 초과근무 총량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무국 소속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음.</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최고 1조 3천억 원에 달하던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6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체납세금의 징수실적이 아닌 결손 처분에 따른 것으로, 결손처분은 신중히 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매시에도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압류부동산·자동차의 체납처분 중지 후 결손처분 조치</li> <li>-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는 장기 소액채권 (185만원 미만) 압류해제 후 결손처분</li> </ul> </li> <li>○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징수사례 연구를 강화하여 결손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철저히 하겠음</li> </ul>
<p>○ 시유지의 연간 매도계획을 마련하여 세입·세출 추계 시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라고, 무단점유 변상금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률이 높으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위하여 매년 세입 편성 전 대규모 사업시행기관(SH공사, LH공사, 한국도로공사)에 차년도 시유지 매입 계획을 파악하여 세입추계에 반영하고 있음</li> <li>○ 또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 해소를 위해 매년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 중이며,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실시 후 압류조치 하고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도 체납징수계획 수립('22.4월) 및 분기별 재산조회 · 재산압류 조치 예정</li> <li>○ 2023년도 시유재산 매입계획 파악('22.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사업시행기관(SH, LH, 한국도로공사)에 공문 발송 예정</li> </ul> </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수의계약 공개견적 시스템 사용에 부서에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사용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 공개견적시스템은 발주부서 담당자가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 견적서를 찾기 어려운 경우, 적정 업체를 찾기 위한 발주 담당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조달기회가 없었던 신생업체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공개시스템으로, 행정포털 등을 통해 안내하여 발주담당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li> <li>○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등을 통한 안내 완료('22.1월)</li> </ul>
<p>○ 자의적 조세행정은 기초자단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치구 세입으로 재정자립 재원도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서울시 세입의 감소 뿐 아니라 교부세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감면 결정전에 미리 협의를 전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검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세감면조례에 따라 자치구세를 감면할 수 있음</li> <li>○ 즉,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 권한으로, 감면 결정 전 사전 협의를 전제하는 제도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음</li> <li>○ 다만, 일부 자치구의 무리한 감면 결정은 다른 자치구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시 및 자치구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실효적 사전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3월중 시 및 자치구 조례 담당 영상회의 개최</li> <li>-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 또는 수시 자치구 동향 파악 등</li> </ul> </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시세징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필요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종합대책 수립 및 세입실적 분석을 통한 시세입 징수목표 초과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도 세입징수 종합대책 수립 및 시·구 합동영상회의(3월)</li> <li>- 세목별·월별 세입실적 분석 및 자치구 분기별 비대면 점검실시</li> </ul> </li> <li>○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으로 시세징수 효율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초 가상자산 은닉 고액채납자 압류, 수표교환 내역 추적을 통한 채납액 징수 등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 징수기법 활용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시세입 징수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市 세무조사분 직접징수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통한 은닉세원 발굴</li> <li>- 시·구 합동, 법인시공 개인건축주 취득물건 적정 신고여부 전수조사</li> </ul> </li> </ul>
<p>○ 3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최00 전 회장의 압류 예술품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체납자는 적극 대응하지 않아 압류 물품을 반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을 언급하며 사회저명인사의 체납액 징수는 상징성이 큰 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가단5079137 소유권 확인 소송 피고보조참가 신청('21.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 이00(최00 전 회장의 부인)외 3(최00 전 회장의 자녀)</li> <li>- 피고: 최00 전 회장</li> </ul> </li> <li>○ 에스앤엘 파트너스(신영무 외3) 변호사 선임('21.7.5.)</li> <li>○ 우리시 피고보조참가 허가('21.7.20.)</li> <li>○ 우리시 피고 답변서 제출('21.12.22.)</li> <li>○ 소송 변론기일 지정('22.2.18.)</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소극적 답변 등 불성실 대응이 예상되므로, 우리시에서는 피고보조참가자로서 피고 답변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음</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건수, 체납금액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액은 제자리 걸음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 등 서울시 체납행정을 강화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p>	<p>□ 추진상황 : 추진중</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체납자 거소지 등 정보확인을 위한 건의(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등록대장 조회 일원화, 체납자 입국 시 입국통보, 출국제한 신설 등</li> </ul> </li> <li>○ 외국인 대상 체납세금 납부안내문 제작·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파키스탄어)</li> <li>-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게재·팝업공지</li> </ul> </li> <li>○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외국인 보험 조회(39천명) 및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국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압류 대상 확인(522명, 808건)</li> <li>- 휴면보험금 압류 대상 확인(287명, 287건)</li> <li>- 자치구별 압류 및 추심 실시 통보</li> </ul> </li> </ul>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담당부서와 협업으로 체납 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손안의 서울’, ‘리빙 인 서울’ 책자 내 서울시 세금 안내 수록</li> <li>-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센터) 자체 홍보물 및 배포책자 내 ‘서울시 세금 안내 및 미납시 불이익 등’ 내용 수록</li> <li>-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센터) 상담사 세금교육 지원</li> </ul> </li> <li>○ 자치구와 협업으로 외국인 체납 일제정리 실시(‘22.8~9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전체 외국인 체납자 8만 명 중 99.8%가 자치구 소관으로 외국인 체납 일소를 위한 25개 자치구 일제 정리 기간 추진</li> </ul> </li> <li>○ 외국인 체납 중 개인분 주민세 체납이 대부분(78%)을 차지하고 있어 세목 신설 근거 법 개정 건의(체류세, 관광세 등)</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	------

○ 서울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아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체납 징수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승진 등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건의함  
(38세금징수과)

추진상황 : 추진중

징수율 저조의 주요 요인

- 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지방소득세 체납 규모 과다
  -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의 국세(소득·법인세) 과세 후 지자체로 통보되어 항상 국세보다 후순위 조세채권으로 밀립
  - 선순위 조세채권인 체납 국세가 압류재산을 먼저 공매하여 변제되는 반면, 체납 지방소득세는 체납으로 남는 악순환 반복
  - 16개 시·도의 지방소득세 체납액 합계가 57.5%이고 서울시는 단독으로 42.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

〈전국 지방소득세 체납 대비 서울시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전국 지방소득세 체납	전국 대비 16개 시도		전국 대비 서울	
		지방소득세	비중	지방소득세	비중
2018	16,874	8,477	50.2	8,397	49.8
2019	15,950	9,199	57.7	6,751	42.3
2020	15,546	10,125	65.1	5,421	34.9
평균	16,123	9,267	57.5	6,856	42.5

- ② 체납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고질체납 과다
  - 체납자의 재산은 압류하였으나 타기관 선압류, 근저당 과다 등으로 공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계속 체납으로 남는 경우 발생
  - 전국 지방세 체납 중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 5,689억원('20년) 중 서울시 단독으로 2,102억원(36.9%)를 차지

향후계획

- 「납세담보」 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세보다 선순위 채권 확보
  - 압류 선착주의의 예외로 '납세담보'를 통한 선순위 채권확보가 가능
  -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납세담보 중점 추진을 통한 체납액 정리 실시
-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통한 실익없는 압류재산 일제 정리
  - 실익없는 부동산·자동차의 등기부 등 정리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 실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탈루된 지방세를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의 실적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시민 제보로 징수한 금액이 6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부진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규모는 5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은 적극적인 시민 제보 유인책으로 부족함.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국제 수준의 포상금 지급률 인상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 필요함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독성과 홍보효과가 높은 서울시 옥외매체에 3주간 집중 노출</li> <li>- 자치구 소식지(‘21.12월 호) 게재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주요 SNS 계정, 내손안의 서울, 팟캐스트 등 홍보</li> <li>- 서울시 및 자치구 전광판 등 주요미디어와 가로게시대 홍보를 동시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li> <li>- 25개 자치구 소식지 게재</li> </ul> </li> <li>○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인상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제2항 개정 건의(행정안전부)</li> </ul>
<p>○ 매년 평균 15% 수준의 지방세 초과 세입 발생으로 2조 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 운영은 시민을 위한 필요사업에 적기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재정운영일 뿐 아니라, 그만큼 필요 이상의 세입을 시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세입은 과거 5년의 징수추이 등을 반영하고 세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입 징수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과학적 추계하였음</li> <li>○ 다만, 지나치게 보수적 예산편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회의 지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확장적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도 금년 예산은 전년 본대비 19.8%, 추경대비 7.8% 인상하여 추계</li> </ul> </li> <li>○ 특히 소상공인 지원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다소 적극적인 세입확장(전년대비 15.3% 인상)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겠음</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	------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확대검토 필요  
(세무과)

추진상황 : 추진중

추진내용

- 개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의 피해 최소화
- 대상: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 지원실적(2021.11말 현재)

(단위: 건, 억원)

연도	합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율 인하		세무조사 유예	감면(조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건수	금액
계	688,215	7,639	686,075	6,967	807	371	129	39	186	30	41		
'21.11	271,325	1,005	270,027	728	277	46	59	1			20	942	230
'20.12	416,890	6,634	416,048	6,239	530	325	70	38	186	30	21		

향후계획

-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대한 납세지원 지속 추진
  - 코로나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조례 등에 의한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상공인 등 지원하고자 함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전국적 체납의 공동사무 수행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합 설립 계획에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합 설립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야함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원입법 수단을 통해 지방세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체계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행정안전부 조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질적인 행태임. 지방세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방자치권 침해 관련 지방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돕겠음 (세무과)</p>	<p>□ 추진상황 : 추진중</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조합 설립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관계부처 합동, '19.6.5.) 안전 포함</li> <li>- 지방세조합 설립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의결('20.12.9.)</li> <li>- 행안부 주관 17개 시·도과장 회의('21.5.10.)</li> <li>※ 지방세조합 설립협의회 구성 및 설립지원 TF 임시조직 운영</li> <li>경기도에서 명목상 지방세조합 설립협의회 대표를 맡기로 결정</li> </ul> </li> </ul>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권 침해여부 분석 및 시의회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권 침해여부, 우리시 실익분석 등 업무추진시 시의회와 협의 예정</li> </ul> </li> <li>○ 지방세조합 참여 여부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로 구성될 경우 대비 시 참여 여부 재검토</li> </ul> </li> <li>○ 지방세조합 수행업무 조정 및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익분석을 통해 우리시 실익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되, 실효성이 떨어지는 업무는 중립의견 유지</li> </ul> </li> </ul>
<p>○ '82년도에 한강 재정비 사업으로 설치된 한강둑 부지가 도로부지로 되어있지만 현재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 부지에 '20년도에 정부지원사업인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예산도 확보하고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는 등 진행 중임. 다만 이 부지의 일부(1,718㎡)는 사유지로서 자치구에서 매입이 어려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4조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자산관리과)</p>	<p>□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SOC사업은 자치구 고유사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등의 요구 시에는 무상사용은 불가하며, 우선적으로 자치구가 토지 매입하거나 재산을 교환하는 방안이 사유재산 관리·보존에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동 재산의 유지·보존 책임이 있는 재산관리관인 도로계획과에서 현재 구유지와 재산 교환 추진 중임</li> </ul> </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영등포구 종합시장 토지는 민간 소유이고 건물의 일부(공유지분: 계단, 복도)는 서울시 소유이므로 주민들이 일일이 소송하여 정리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함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사항 관련 소송은 도로계획과 소관사항으로써, 소송이 종결('17.11 화해권고결정)되었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18.2월)</li> <li>-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입증자료(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가 있을 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나</li> <li>- 입증자료가 없거나,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市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함(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li> </ul>
<p>○ 계약심사과와 같은 민원인의 내방이 많은 부서는 사무실 공간을 넓게 재배치하는 것을 건의함 (계약심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21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과 내방인은 대부분 내부직원임</li> <li>○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계약심사과 사무실 직접 방문 자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대면업무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분산사용 함으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음</li> <li>○ 사무공간 배치 총괄부서(총무과)에 협조 공문 발송('2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공간 재배치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협조요청</li> </ul> </li> </ul>

#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직급별 재택근무 현황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0.)
○ 서울린 사업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0.)
○ 재무국 팀장이 주무관에 비해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는 사유 (서면보고 요청)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0.)
○ 오세훈 시장 이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하였음. 이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진행 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해 주고 정부와 협의내용도 보고바람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시가표준액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정부 건의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하겠음
○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 수당 지급 근거 및 상설 설치 관련 보고 요청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9.)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 최근 3년간 상위 30개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내역(금액순으로)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5.)</p>
<p>○ '22년도 지방소비세 추계자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9.)</p>